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412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 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산업기술	2200118		2024. 6. 4.	
보호법	2200135	임종득의원 등	2024. 6. 5.	2024. 8. 27.
일부개정법률안	2200184		2024. 6. 7.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에서 법률안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 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나.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21조).
-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8조의2 등신설).

법률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25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로 한다.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5. 중대한 과실로 제4호의 거부, 기피 또는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1. 보호구역의 설정 ·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 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5.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에"를 "제10조제3호에"를 "제10조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4
수립한 때에는 <u>국회 소관 상임</u>	기체 없이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	소관 <u>상임위원회에</u>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	
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	
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3
수립한 때에는 <u>국회 소관 상임</u>	<u>지체 없이 국회</u>
<u>위원회에 제출</u> 하고 이를 공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	
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	
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2

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생략)
- 2.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 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 3. ~ 5. (생략)
- ④·⑤ (생 략)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 략) <신 설>

<u>28명</u>
③
1. (현행과 같음)
2
<u>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u>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 (-1-1) 1 1 1 1

- 3. ~ 5.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 설>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 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 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 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 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 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 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 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중대한 과실로 제4호의 거부, 기피 또는 그 사본을 보유하 는 행위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함한 방위산업기술-----

-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 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 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 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 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 <u>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u> <u>수행한다.</u>
-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 링 업무 지원
-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 5.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 시 업무 지원
-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 9.「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

 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경우
-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아니한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 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

<신 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저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 ② <u>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발금에 처한다.
- ③ <u>제10조제3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 ⑥ (생 략)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①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u>1년</u> 이상의 유
<u> 기징역에</u> <u>이 경우 20억</u>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u>제10</u> 조제1호·제2호 및 제4
<u>ই</u> পী
③ <u>제10조제3호·제5호에</u>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2항부터</u>
_